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9

발의연월일: 2021. 5. 27.

발 의 자:권명호·정희용·박대수

정진석 · 강민국 · 이철규

임이자 · 윤창현 · 김형동

정운천 · 이종성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 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국내	<u>2024년 12월 31일</u>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u>2021년 12월 31</u>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u>2024년</u>	12월	31일-
1.•2. (현행:	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